



## ■ 긴급지원제도란?

주소득자가 사망, 가구구성원의 중대한 질병 등으로 인하여 갑자기 생계유지가 곤란해진 저소득층에 대하여 우선 지원하고, 사후에 지원의 적정성을 심의하는 제도

## ■ 긴급지원대상자(위기상황)

- 주소득원의 사망, 가출, 행방불명, 구금시설에 수용 등과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해 소득상실한 경우
- 가정폭력·학대, 화재로 인한 주거가 곤란한 경우
- 그 밖에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(휴폐업, 실직, 출소자, 부랑인)

## ■ 긴급지원내용

종류		지원내용	기간
금전 · 현물 지원	생계지원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식료품비, 의복비, 생계유지비 지원</li> <li>- 4인가구 기준 1,194,900원</li> </ul>	3개월
	의료지원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각종검사,치료등 의료서비스 지원-300만원 이내</li> <li>(※ 퇴원후 비용은 지원불가)</li> </ul>	1회
	주거지원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임시거소제공 또는 이에 해당되는 비용</li> </ul>	3개월
	교육지원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초·중·고 수업료,입학금등 필요한 비용 지원</li> </ul>	1회 (분기단위)
	사회복지시설 이용지원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사회복지시설에 입소 또는 이용서비스 제공</li> </ul>	3개월
	기타지원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동절기(10~3월)연료비 : 98,000원</li> <li>해산비 : 60만원, 장제비: 75만원</li> <li>전기요금은 최대 50만원</li> </ul>	1회
민간기관·단체 연계지원 등	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민간 긴급지원 프로그램 연계</li> <li>기타 상담 등</li> </ul>	수시

## ■ 적정성 판단 기준

- 소득기준 : 『국민기초생활보장법』기준중위소득 75%이하

가구규모	1인	2인	3인	4인	5인	6인
원/월	1,280,256	2,179,896	2,820,024	3,460,152	4,100,280	4,740,408

- 재산기준

지역	대도시	중소도시	농어촌
금액(천원)	188,000	118,000	101,000

- 금융재산 기준 : 500만원 이하

## ■ 지원요청 및 신고

읍·면 행정복지센터, 군청 주민복지과

## ■ 신청 절차

읍·면 행정복지센터(현장확인) → 군청 주민복지과(선지원 및 사후조사) → 긴급지원 심의위원회(적정성 심의, 지원중단, 비용반환 심의) → 사후  
연계